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구체화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0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구체화 (안 제34조제15호)	2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안 제38조제1항)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성호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과다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제3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구체화
(안 제34조제15호)

현행	개정안
○ 예산안 첨부서류 -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등 명세서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등 -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 국유재산 명세서 - 성과계획서 - 성인지 예산서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추계서 등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 예산안 첨부서류 <현행과 같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u>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지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¹⁾ 등의 연구기관이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²⁾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³⁾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함.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1)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함.

2)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DB) 누리집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한편, 「국가재정법」 제34조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제38조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⁴⁾

4)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개정안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미 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현재 정부는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업 소관부처, 사업명과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호’ 및 호의 내용만을 적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⁵⁾

-
-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 9. 성인지 예산서
 -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 12. 삭제
 -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 5)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23. 4. 12.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

연번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1	환경부	광주 제1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 (사업목적) 광주 제1하수처리시설 개량 ☐ (기대효과)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보건위생 향상 ☐ (면제사유)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2	환경부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 (사업목적) 친환경적인 하수도 정비 ☐ (기대효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수질개선 ☐ (면제사유)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3	환경부	항사댐 건설사업	☐ (사업목적) 신광천 상류에 홍수조절 전용댐 건설 ☐ (기대효과) 홍수대응능력 제고 ☐ (면제사유) 제7호 재난예방
4	환경부	울산 청량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 (사업목적) 울산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 (기대효과)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로 수질개선 기여 ☐ (면제사유)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5	행복청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사업목적)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기대효과) 국가균형발전 도모 및 국정운영 효율화 제고 ☐ (면제사유) 제1호 공공청사 등 신증축
(이하 생략)			

자료: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한편, 개정안 조문 중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중 ‘해당 연도’는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문을 수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u>사유</u>	15. ----- ----- ----- <u>사유</u> 로서 <u>총사업비</u> , <u>사업기간</u> , <u>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u>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기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 SOC 및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 - 그 외 사업: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임.

개정안은 도로, 철도,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하여 2023년의 경우 명목GDP는 591조원에서 2,236조원으로 약 3.8배 증가하였고, 정부의 재정규모(본예산 총지출 기준)도 145조원에서 639조원으로 약 4.4배

증가하였으며,⁶⁾ 물가도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1999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는 1.8배 상승하였음.⁷⁾

< GDP(명목)·총지출 비교 >

(단위: 조원)

구분	1999년	2023년	비교
GDP(명목)	591	2,236	약 3.8배 증가
총지출 (본예산 기준)	145	639	약 4.4배 증가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계정(2015년기준), 기획재정부, 2024. 10.

이에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의 물가 상승 및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여 SOC 및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물가상승과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계속 증가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품질저하 또는 기간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조사기간은 16.7개월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기간인 9개월⁸⁾을 7개월

6) 국가통계포털(KOSIS), 기획재정부, 2024. 7.

7)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개편한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1999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1.76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를 기록함(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8)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

이상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조사기간 >

(단위: 건, 개월)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조사완료 사업수	18	34	13	28	10	20.6
조사기간	14.1	19.3	16.2	16.3	14.3	16.7

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역량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해당 사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

반면, 물가상승이나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수는 2023년 총 28건으로, 면제 건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이 >

(단위: 건, 조원)

구분	면제 건수	면제 규모
2005	3	0.7
2009	30	26.0
2014	40	14.5
2019	47	36.0
2020	31	30.0
2021	31	10.5
2022	26	17.2
2023	28	12.0

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SOC 및 R&D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최근 5년간 분야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

(단위: 건, 조원)

구분	실시 건수				실시 규모			
	전체	SOC	R&D	기타	전체	SOC	R&D	기타
2019	71	24 (33.8)	31 (43.7)	16 (22.5)	63.6	30.6 (48.1)	27.6 (43.3)	5.4 (8.5)
2020	52	10 (19.2)	37 (71.2)	5 (9.6)	31.4	5 (15.9)	25.5 (81.2)	1 (3.2)
2021	60	21 (35.0)	23 (38.3)	16 (26.7)	74.9	26.9 (35.9)	20.5 (27.3)	27.6 (3.7)
2022	42	14 (33.3)	16 (38.1)	12 (28.6)	30.8	12.8 (41.6)	9.1 (29.5)	8.9 (2.9)
2023	42	22 (52.4)	12 (28.6)	8 (19.0)	41.8	31.6 (75.6)	7.9 (18.9)	2.3 (5.5)

자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8.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변화된 국가경제규모 및 재정규모의 추세를 반영하여 SOC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500억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음.⁹⁾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기재위에서 경제·재정규모 확대, 사업규모화·융복합화 추세 등을 종합고려하여 SOC·R&D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변경기로 한 만큼 그 논의·심사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¹⁰⁾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건(2024. 9. 30.기준)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9)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23.4.12.)

10) 정부는 2024년 5월 R&D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 추진을 발표하였고,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1천억원 이상 R&D사업에 대한 사전 전문검토, 맞춤형 심사제도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별도 보완절차 등의 세부 방안을 마련 중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관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0. 기준)

구분	내용
정성호의원안 (제2200008호)	- SOC, R&D 사업: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 - 그 외 사업: 현행과 같음
박덕흠의원안 (제2200829호)	
최수진의원안 (제2200269호)	-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원택의원안 (제2204236호)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다음----- -----대규모 신규사업에----- ----- ----- ----- ----- ----- ----- ----- -----<단서 삭제>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1.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신 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신 설>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신 설>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신설>	에 따른 도시철도
<신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신설>	따른 항만시설
<신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신설>	에 따른 공항시설
<신설>	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
<신설>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설>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신설>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신설>	따른 수도
<신설>	아. 「하천법」 제2조제3호 가
<신설>	목 및 나목에 따른 하천시
<신설>	설
<신설>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도로·철도·도시철도·항
	만시설·공항시설·댐·수
	도·하천시설 및 관련시설
	로 인정하는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3.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현행	개정안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u>사업</u> ② ~ ⑥ (생략)	<u>업</u>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u>지능정보화 사업</u>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u>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u> 4. ----- -----<u>사업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업</u> ② ~ ⑥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